

7월 26일부터
신청가능!

전세사기 예방하고, 청년에게 힘이되고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?

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
지원대상

-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* 으로서
2023.01.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
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 7천만원)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
* 경기, 부산 34세, 전남 45세,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

제외대상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
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출서류
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- 본인명의 통장 사본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
- * 기존지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
신청방법

- 방문신청**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
※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(1599-0001) 문의
- 온라인신청**

서울	youth.seoul.go.kr (청년동행정보통)
인천	www.gov.kr (정부24)
경기	gg24.gg.go.kr (경기민원24)
세종	www.gov.kr (정부24)
충남	www.gov.kr (정부24)
부산	young.busan.go.kr (부산청년플랫폼)
대구	anbang.daegu.go.kr (대구 청년안방)
경북	gbyouth.co.kr (경북 청년e클럽)
경남	baro.gyeongnam.go.kr (경남 바로서비스)

지원내용

-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
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
※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,
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

사업문의

-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-0001